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2.11.)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규정

(안 제9조의2제7항 개정, 제9조의2제8항 신설, 제9조의2제9항 신설)

- (공개의 범위) 시장명 및 시장주소,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 (공개의 방법)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규정(안 제9조의17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 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0. 4. 17. ~ 2020. 5.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의2 중 “상점가”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명 및 시장주소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제9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 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개정한다.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7(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1차 위반인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2차 위반인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3차 위반 이상인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35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u> <u>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u> <u>는 구역 ”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u> <u>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u> <u>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u> <u>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u> <u>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u> <u>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u> <u>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u> <u>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 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u>상점가</u> 또는 상권활성화구 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 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 ----- ----- ----- --·<u>상점가·골목형상점가</u> ----- ----- -----.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 검) ①~⑥ (생략)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 검) ①~⑥ (현행과 같음)
<u>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u> <u>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u>	<u>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u> <u>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u>

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
해야 한다.

<신설>

<신설>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명 및 시장주소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
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
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
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
해야 한다.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

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 ⑥ (생략)

<신 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17(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가맹점
에 대한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른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1차 위반인 경우: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2차 위반인 경우: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3차 위반 이상인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별표 3과 ----.

지원 중단의 기준 등(제9조의1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 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그 처분이 지원중단 12개월 이하인 경우, 지원중단을 경고로 감경할 수 있으며, 지원중단 12개월 초과인 경우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시장등의 안전 및 재해·재난 복구 등에 관한 지원은 이 법에 따른 지원중단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6조의6 제1항제1호	지원중단 1 2개월	지원중단 2 4개월	지원중단 3 6개월
나.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법 제26조의6 제1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 2개월	지원중단 2 4개월
다. 법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6조의6 제1항제2호	지원중단 1 2개월	지원중단 2 4개월	지원중단 3 6개월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 평가매점	법 제74조제1항제 2호	
1) 환전대평가매점이 개별가매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평가매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 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 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 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 2호	300